

# 방송 '자막 논란'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하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7946 정정보도 청구

장윤미 법무법인 메타 변호사

## 1. 사건의 개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을 순방하던 중 뉴욕 현지 시각으로 2022년 9월 21일 오후 4시경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하였다. 윤 대통령은 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앞으로 총 1억 달러를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증액을 해줬다. 미국은 의회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펀드에 60억 달러를 더 기여할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한미 두 정상은 회의 종료 직후 48초 정도 환담을 나누고 헤어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행사장을 빠져나왔는데 이때 한 발언이 풀(pool) 기자단을 구성해 취재 중이던 국내 언론사 카메라에 담겼다. 해당 영상은 국내의 각 언론사로 송출되었는데, 위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욕설과 비속어를 하였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영상을 확인한 <MBC>는 2022년 9월 22일 오전 10시 7분경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자사 유튜브 채널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제목을 붙여 논란의 영상을 게재하고, 영상에 "국회에서 이 새끼(이하 'XX'라 칭함)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았다. <MBC>는 같은 날 <정오 뉴스>와 <뉴스데스크>에

서 해당 영상을 보도하며 영상 자막에 ‘미국’을 추가하여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기재해 보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도’라 칭함).

이에 외교부는 2022년 12월 <MBC>를 상대로 “사실 확인 결과, 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②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뉴스데스크>에서 낭독하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외교부를 보도의 피해자, 즉 소송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해당 영상에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단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였다.

## II.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7946 정정보도 청구 사건

### 가. 해당 사건 보도의 피해자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원고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어야 한다. 이 사건 보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사자 지위가 있다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소송의 당사자 지위가 외부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MBC>는 이 사건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외교석상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외교부는 보도와 개별적 관련성이 없고 보도에서 외교부가 직접 언급되지도 않아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MBC>는 위 주장의 근거로 판례를 제시하였는데, 판례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의 ‘피해자’를 “그 보도 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 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자”(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판시하여, 정정보도 청구의 당사자를 구체적, 개별적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다.

2)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에게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언론중재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제3항),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외교부의 업무에 관한 보도’에 해당하므로 외교부에게도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 문제가 된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위 회의는 외교부의 소관 업무라는 점 ▲ <MBC>가 이 사건 보도에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이를 국가참사이자 막말 사고 외교로 외교,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도해 이 사건 보도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외교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 점 ▲ 이후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였는데 제안이유 중 하나로 막말 외교에 대하여 주무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거론된 사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보도와 관련, 외교부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법원은 외교부에게 당사자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후 ‘바이든’이라고 기재한 자막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보도는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 방송 자막내용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 허위 여부의 입증책임

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 기사는 ‘진실하지 않아야’ 하는데(제14조 제1항), 허위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통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가 부담한다. 문 제제기를 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민사법의 원칙이기도 하고, 언론보도에 있어 언론사는 특히 적대적 사실관계를 취재할 경우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반하여, 취재대상이 된 당사자는 보도 내용의 직접적인 체험자이거나 진실에 접근하기 용이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보도의 허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인 외교부가 아닌 <MBC>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판례를 언급하며,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는 입증책임이 언론사에 배분된 전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과거 PD수첩 판결에서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 관계가 과학분야에 관한 사실이고 그 과학적 사실이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중략) ‘언론사가’ 그 사실적 주장의 근거로 삼은 자료를 포함하여 소송과정에서 현출된 모든 과학적 증거의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증명력을 음미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방법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즉, 법원이 인용한 PD수첩 판례는 과학분야에 대한 보도가 정정보도의 대상이 된 사안에서, 재판 당시의 과학수준으로 진실을 알기 어려울 때 언론사가 보도 내용을 어떤 경위로 진실로 믿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언론사에게 일부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판례를 대통령의 음성과 관련된 이 사건 보도와 동일한 차원으로 보고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다.

나) 이어 법원은 '사람의 음성은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고,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발언자 스스로도 자신이 사용한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고, 발언자의 해명은 개인의 주관 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것이 객관적 방법'이라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카메라 영상에 담긴 발언에서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까지 정정보도 청구자에게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진실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해내기 어려운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언론사가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고 보도하였다면 언론사가 보도의 근거 자료를 소송과정 중 제출해야 하고, 그 자료의 증명력을 살피거나 탄핵하는 방법으로 특정 단어의 언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증명책임의 배분 원칙이라고 판단하였다. 이같은 판단 위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증책임을 부담한 <MBC>가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게 된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2) 법원의 구체적 판단근거

가)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을 진행하였는데 감정 결과는, ① 국회에서, ② 이 XX들이, ③ 승인 안해 \*(일부 판독불가), ④ 판독불가, ⑤ 쪽 팔려서, ⑥ 어떡하나였다. 즉, 이 사건 보도의 가장 핵심 쟁점인 '바이든'이라는 언급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는 감정을 통하여 판독 불가로 나왔다. 법원은 이와 같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윤 대통령 발언 당시의 상황에 근거할 때 '바이든'이라는 언급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았다.

▲ 윤석열 대통령이 재정공약회의에서 3년 간 1억 달러 기여를 언급하고, 미 대통령과 행사장에서 48초 간 대화를 나눈 후 행사장을 나오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왔는데, 1억 달러 기여를 위해서는 우리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를 상대로 해당 발언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바이든 대통령도 6억 달러를 기여하겠다고 연설하였으므로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대해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서 ‘의회’가 아닌 ‘국회’라고 언급했고, 미국 의회를 지칭하면서 ‘국회’라고 잘못 말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한민국 국회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박진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에서 ‘제가 대통령 옆에 지나가면서 이해한 취지는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제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창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향하여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와 같이 법원은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고 본 뒤, <MBC>가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갔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MBC>가 대통령의 발언에 ‘바이든’이 들어갔다고 판단한 근거로 제출한 자료들은 신뢰할 수 없거나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 <MBC>는 풀 기자단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같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당시 풀 기자단 내에서도 발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았다. ▲ 또한 <MBC>는 이 사건 보도 당시 자체개발한 음성인식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도 전 위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언을 검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보도 이후 <MBC> 제3노조에 서 위 서비스로 음성 검증을 한 결과, 비속어 논란이 있는 구간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 이 밖에도 <MBC>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대통령실이 보도를 하지 말라고만 요청하였을 뿐 구체적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보도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그러했어도 대통령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 나아가, 당시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사가 148개에 달하기는 하지만, <MBC>의 첫 보도에 다른 언론사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단 <MBC>의 판단에는 근거가 부족하고, 타당하지 않아 이 사건 보도는 정정되어야 하고, <MBC>가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 외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Ⅲ.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 가. 외교부가 이 사건 보도의 피해자인지 여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언론중재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기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보도가 외교부의 업무에 관한 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외교부가 정정보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확히는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외교부가 원한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대통령이 당시 ‘미국’, ‘바이든’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 보도에 외교 참사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외교 후폭풍을 보도한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보도가 ‘외교부의 업무’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해당 보도의 피해자가 실제로는 대통령인데, 피해자의 범위를 관련 정부부처로까지 확대하게 되면, 국가지도자에 대한 보도와 관련한 대응을 정부부처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나. 불명확한 사실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측에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패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상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원고이다. 원고의 정보접근성이나 전문성이 피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의료소송 등에 있어서만 예외적으로 원고의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광우병 보도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입증책임이 <MBC>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고, 항소심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음성에 대한 보도와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광우병에 대한 보도를 동렬에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상의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와 같이 원고(외교부)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다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의 청구는 기각되었을 것이다. <MBC>가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계류 중인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